

# 수출현안 · 수입제도 모니터링(대만 7월분)

## 수입제도 변경사항 / 수출현안

□ <공고> 디코플(DICOFUL) 등 11종 농약의 사용 금지 제도 및 25% 아세페이트 유제(乳劑) 등 6종 농약의 사용방법 및 범위 수정

(公告「大克蟎等十一種農藥為禁用農藥及限制25%毆殺松乳劑等六種農藥之使用方法及其範圍」)

○ **공고기관** : 행정원 농업위원회(行政院農業委員會)

○ **공고일자** : 2018년 7월 23일

○ **공고번호** : 農防字第1071488593號

○ **공고의거** : 농약관리법 제18조 제1항 규정 (農藥管理法第十八條第一項規定)

○ **공고내용**

1. 농약의 사용 금지에 관련하여

- 디코플(DICOFUL), 산화페부탄주석(FENBUTATIN-OXIDE), 16.5% MALS, 8% 메탄아르손산(METHYLARSONIC ACID), 1% 네오아소진입제(NEO ASOZIN), 6.5% 네오아소진용액(NEO ASOZIN), 42.3% NOREA + MSMA, 0.49% KASUGAMYCIN + MON SAN, FERRIC METHYLARSONATE 등 9종 농약은 2018년 8월 1일부터 이에 제조, 가공, 포장, 수입, 수출, 판매, 사용 등을 금지 함
- 35.2% MSMA, 45% MSMA 등 2종 농약은 2018년 08월 01일부터 이에 제조, 가공, 포장, 수입 등을 금지하며, 2019년 2월 1일부터 관련 수출, 판매, 사용 등을 금지 함

2. 농약의 사용방법 및 범위 제한

- 25% 아세페이트 유제(乳劑)(ACEPHATE), 75% 아세페이트 수용성 입제(粒劑), 75% 아세페이트 수용성 분제(粉劑), 50% 아세페이트 가습성 분제(粉劑) 등 5종 농약을 2018년 8월 1일부터 농작물 벼에 사용을 금지 함
- 8% chlobenthiazone 농약은 2018년 8월 1일부터 모든 농작물 사용에 금지함

<시사점>

- 상기 농약에 대한 사용제도가 이번 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법령을 사전 숙지하여 한국농수산물 수출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필요 함

\* 자료원 : 대만 행정원 농업위원회 동식물 방역 검역국(行政院農業委員會動植物防疫檢疫局)

□ 흑구기자(黑枸杞) 속성에 관련하여 「黑枸杞(黑果枸杞)」屬性

○ 공고기관 : 대만 위생복지부 (衛生福利部)

○ 공고일자 : 2018년 3월 1일

○ 공고내용 : 흑구기자는 일반 건조과실로 분류하며, 중약재(中藥材)로 분류 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의료효능 표기 및 홍보를 해서는 안 됨

- 최근 대만 시중에 흑구기자 관련 제품이 판매가 되면서 대만 위생복지부에서는 해당 원료에 대한 속성 및 표기사항 규제에 대해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공고함
- 흑구기자는 식물류 가지과에 속하며, 학명은 *Lycium ruthenicum* Murr이고, 대만중약전(台灣中藥典), 중국약학대사전(中國藥學大辭典), 본초비요(本草備要) 및 본초강목(本草綱目) 등 서적에 중약재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 이를 반영하여 흑구기자를 일반 건조 과실로 분류함
- 약사법 규정에 따르면 약물에 속하지 않은 원료는 의료효능의 의미가 있는 표기 및 홍보를 해서는 아니 되므로 흑구기자 관련 제품 라벨링 표기 시 의료효능에 대한 표기를 해서는 안 됨

<시사점>

- 한국식품 수출 시 해당원료에 대한 제도를 사전 숙지하여 라벨링 표기 및 통관 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상기와 같은 내용 참고 및 주의가 필요함

\* 자료원 : 대만 도원시정부 위생국(桃園市政府衛生局)